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8월 28일 부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2년 8월 28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02년9월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제안이유

-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예산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주요골자

- 주차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5%이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함.(안 제2조제2호)
- 일반회계 전입금은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비로 사용함.(안 제3조제5호)

3. 주요질의 및 답변

질 의	답 변
<p>○ 일반회계의 예산중 특별회계 예산으로 5%이내에서 전입금을 받을 경우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p>	<p>○ 일반회계 예산이 연간 약4,000억 원으로 200억원정도 특별회계로 전입됨.</p>
<p>○ 5% 이내로 전입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근거와 전입금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p>	<p>○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에 활용하고자 하며, 그동안 각동별 구별 주차장 수요를 조사한 결과 연간 2-3백억 정도가 필요하여 5% 이내로 정하였으나, 사실 이금액도 부족함.</p>
<p>○ 특별회계에는 주차장관련 예산이 없는가?</p>	<p>○ 연간 40억원정도 되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합해 연간 240억원 정도로 사업을 할 계획임.</p>
<p>○ 몇년 정도 전입금을 받을 계획인가?</p>	<p>○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우선 10년정도 받고 10년후에는 사항을 봐서 정할 계획임.</p>
<p>○ 차량소유가 이제는 1가구 2대가 되는 세대도 많음. 이런식으로 차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주차난을 하루, 이틀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공영주차장 시설등에 민간자본등이 많이 투자되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p>	<p>○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주차요금을 현실화 하는등 주차 사업에 많은 민간자본이 투자 될 수 있도록 하겠음.</p>
<p>○ 그동안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사업한 것은 없는가?</p>	<p>○ 고정적인 전입금은 없었으며, 필요시 전입금을 받아 사업을 했음.</p>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호
의결 년월일	2002. 9. 10 (제99회)

제출년월일 : 2002. 8. 29

제출자 : 부천시장

제안이유

-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예산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주요골자

- 주차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당해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5%이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함.
(안 제2조제2호)
- 일반회계 전입금은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비로 사용함.
(안 제3조제5호)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22조”를 “제31조”로 하고 제2조제1호중 “제22조제3항제1호”를 “제31조제2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2호중 “제22조제3항제2호”를 “제31조제2항제4호”로 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당해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5퍼센트이내의 전입금”으로 하며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타 도시교통과 주차 관련한 수입

제3조제1호중 “제9조제1항제1호”를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2호중 “제9조제1항제2호”를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제9조제1항제4호”를 “제28조제1항제3호”로 하며 동조제4호중 “제9조제1항제3호”를 “제28조제1항제7호”로 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 등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조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주차장 설치 및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 6. 도시교통측정비진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 등의 교통평가 및 이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 7.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특별회계에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특별회계에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제31조----- ----- ----- ----- ----- -----
제2조(세입) (생략)	제2조(세입) (생략)	제2조(세입)	(현행과 같음)	제2조(세입) (현행과 같음)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1.	-----	제31조제2항제2호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제3항제2호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제3항제2호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	제31조제2항제4호
3. ~ 7. (생략)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 -----당해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5퍼센트이내의 전입금
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8.	기타 도시교통과 주차 관련한 수입	
제3조(세출) (생략)	제3조(세출) (생략)	제3조(세출)	(현행과 같음)	제3조(세출) (현행과 같음)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1.	-----	제28조제1항제1호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	제28조제1항제2호
3.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3.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3.	-----	제28조제1항제3호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도로 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도로 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4.	-----	제28조제1항제7호
<신 설>	<신 설>	5.	-----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 등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5.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주차장 설치 및 공용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6.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 등의 교통평가 및 이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7.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